[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548 Cafe. W Present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4.21 홈페이지 제작 중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3.17. bulkong@naver.com

카페유어프레즌트

정 보 공 개 서

카페유어프레즌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카페유어프레즌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 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 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 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 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 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42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8011-363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31-8011-363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카페유어프레즌트	경: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42							
카페유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회	·번호	대표팩스번호				
프레즌트	_	2019.08.06	권정기	031-8011-3630 -						
	법인등록번호	_	사업자동	등록번호	731	-07-0153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	!백리로 42					
1410	권혜미	카페유어프레즌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정기	031-8011-3630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카페유어프레즌트]라고 합니다.) 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카페유어프레즌트	
상 호	카페유어프레즌트 OO점	
상표(서비스표)	Cafe. Ur Present	상표출원 (출원일자:2020.02.17) 40-2020-0025879 상표등록 (등록일자: 2021.05.11) 40-1726460-0000
기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7,094	0	47,094	66,233	-28,385	-27,407
2022년	80,450	177	80,272	80,667	7,425	8,241
2023년	56,073	616	55,456	96,852	10,817	11,723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이다 이를 될 지의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권정기	대표 2019.08.06.~ 현재 대표 업무									
관련임원	권혜미	이사	2019.08.06.~ 현재	1710	경영지원						

★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직전 3년 간 해당사업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등록 및 명칭 권리내용 등록신청여부(등록번호 일자)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카페유어프레즌트	서비스표 43분류	출원 2020.02.17. 등록 2021.05.11.	출원번호 40-2020-0025879 등록번호 40-1726460-0000	권정기	2031.05.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 (<u>http://www.kipris.or.kr/)에서</u>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카페유어프레즌트] 가맹사업 현황

1.[카페유어프레즌트]를 시작한날 : 2020.01.15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08.06¹⁾

2.[카페유어프레즌트]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카페유어프 레즌트	카페유어프레즌트	권 정 기	2020.01.15.~ 현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 백리로 42

3. [카페유어프레즌트]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ᆲᅖᄋᅅᄑᆁᄌᄐ	대분류	소분류			
카페유어프레즌트 	커피	커피, 음료, 디저트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카페유어프레즌트]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1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A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6	6	-	6	6	_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	-	_	_	-	_	_	_
대구	_	_	_	1	1	-	1	1	_
인천	_	-	-	_	_	-	_	-	_
광주	_	-	_	_	_	-	_	_	_
대전	_	_	_	_	_	-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3	2	1	5	5	_	4	4	_

^{1) 2022.10}월까지 직영점 운영함.

강원	_	_	_	_	_	_	_	_	-
충북	_	_	_	-	-	_	-	_	-
충남	_	_	_	_	_	_	1	1	-
전북	_	_	_	_	_	_	_	_	-
전남	-	-	_	-	_	_	_	_	-
경북	_	_	_	_	_	_	_	_	-
경남	-	-	-	-	-	_	-	-	-
제주	_	_	_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카페유어프레즌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_	_	_	_	2
2022	2	4	_	_	_	6
2023	6	1	1	_	_	6

6 [카페유어프레즌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카페유어프레즌트]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 vat미포함)

	2023년말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미	배출액		
지역	지역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평당 평균	상한	평당 상한	하한	평당 하한	비고
전체	6	121,138	4,600	226,701	7,243	58,413	2,469	
서울	-							
부산	-							
대구	1							5곳미만
인천	-							
광주	-							
대전	_							
울산	-							
세종	_							
경기	4							5곳미만
강원	-							

충북	_				
충남 정북 전남 경남 경당 경우	1				5곳미만
전북	_				
전남	_				
경북	_				
경남	_				
제주	_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카페유어프레즌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카페유어프레즌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75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카페유어프레즌트]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의 전년도(2023년)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가맹사업과 관련한 광고비 및 판촉 내역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ΛΓL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十正	분		합계 가맹		가맹점	UI <u>17</u>
합계	_	_	10	沙 (비공개)	-	
광고	_	गृन् (धस्या)	10	गाः (धस्या)	_	

판촉	_	_	_	_	_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08	031-633-700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 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카페유어프레즌트"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 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카페유어프레즌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มฉ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초도물품비)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5,400				
가입비	8,800	계약 체결일	가맹계약서 제14조의 반환조건 발생	가맹점 개설을 위한 가입비로서 소멸성 비용	상권조사, 점포운영 교육, Know-How 제공
최초교육비	6,600	계약 체결일	교육시작 3일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개시 후	매뉴얼 교육 3주 과정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손해배상액,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등 계약사항 미이행	귀책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정산한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0,400					
가입비	8,800					
교육비	6,600					
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6,074				
인테리어 (점포내장 공사)	가맹본부	33,000	2,200	공 사 시 작 3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단, 공사착수 준비를 위한 인건비 등 실비 제외)	가맹희망자가 직접 업체 선 정 시공가능 (평당330천원 감리비부담)
외부간판	가맹본부	2,200	147	공 사 시 작 3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단, 공사착수 준비를 위한 인건비 등 실비 제외)	
내부설비	협력업체	12,800	853	설치 3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단, 설치착수 준비를 위한 인건비 등 실비 제외)	별첨 참조

의탁자	가맹본부	3,300	220	설치 3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단, 주문제작일 경우는 제 작 전 계약취소)<설치 또는 제작준비를 위한 인건비 등 실비제외>	
집기	가맹본부	3,300	220	설치 3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 (단, 주문제작일 경우 는 제작 전 계약취 소)<설치 또는 제작준 비를 위한 인건비 등 실비제외>	
POS	협력업체	월 사용료	-	해당 업체 와 협의	설치 전 계약취소	사용료 3만원~4만원 정도
인쇄물/홍 보물	가맹본부	1,100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행사 및 제작 전 계약 취소(단, 행사 및 제작 준비를 위한 인건비 등 실비제외)	명함, 각종 스티커, 텀블러 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374	-	물품주문 시 지급	상품 미공급시	원두 10 kg

[상기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외부공사, 철거공사, 소방방염, 전기 증설, 냉난방, 도시가스, 화장실 등)은 총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점포의 규모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m²(평)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 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을 원칙으로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카드매출액의 5%	매월 5일	반환불가	후불제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점별 균분	광고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광고계약 체결 후 반환불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공사업체 (미정)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청구	발주 전 소 공제 후		
지연이자	가맹 본부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지급하는 날까 안된	지여서 반환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 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0-1-1	. (2, 1002, 1001, 001, 00		□ =1=1•/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서비스관리	시설물의 상태점검, 청결상태, 고객에 대한 서비스점검	분기별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 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카페유어프레즌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 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

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카페유어프레즌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거래 총 금액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_	-	-	_	-
합 계				

2)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 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 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메뉴 및 가격표 참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메뉴 및 가격표 참고	별첨-메뉴 및 가격표 참고	본사 공문발송 등		

귀하가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計則	카페유어프레즌트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 는 상기와 같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해당 점포로부터 반경 10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재조정 사유 발생	영업지역 변경(안)을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	→ 당사 담당팀 검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는 경우	토 → 영업지역 변	일 이내에 동의 여부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경(안) 작성 → 가	회신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맹점 사업자에게 서	동의가 있는 경우 15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동의 → 영 │ 업지역 변경 완료

면 통지 → 가맹점│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 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 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5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카페유어프레즌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_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_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	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제6조 제2항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카페유어프레즌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 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	
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게야 쉐피 비오	관련
계약 해지 사유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제반 인·허가의 획득 및 갱신을 해태하는 경우	
○ 가맹금 등 금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및 재교육의 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 는 경우	
○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	
○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규정에 의한 시설·집기 등의 보수·교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세50호 제18
○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물품을 주문하지 않는 경우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을 타사에 제공 또는 판매 하는 경우	
○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이전, 양도를 하는 경우	
○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6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제3항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가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С) "당사"가 부당하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물품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THOOT THOSE
С) "당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제36조 제2항
다	른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목사계각 에서 자꾸	조문
○ "당사"가 파산·화의 등의 신청을 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	
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 제2항
○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0조 제28
○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당사"와 "양도인"의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양도인"의 잔존 계약기간으로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66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에는 귀하의 잔존하는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 비 550만원(부가세 포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 부에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대리행사여 부 통지	비 550만원(부가세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_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 부에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비 550만원(부가세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카페유어프레즌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카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카페유어프레즌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 수	มฉ
10:00~ 21:00	월 최소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2 명 직접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통보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명 - 시 작성근무 시점수의 배우자 살꼐가속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มอ
	1~2 명	직접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	적으로 관리・2	}독하고 있으며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정기/부정기	S/V팀	
친절도 및 시설점검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이용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정기/부정기	S/V팀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가맹본부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저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카페유어프레즌트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카페유어프레즌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당	子비율 -	분담 절차	비고
1 4	9 ± 9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C	0175
711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를 가맹점이 균분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홍보, 상 품광고 및 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 3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참여 여부 결정(전체가맹점의 50% 찬성)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전체 행사	통 일 적 인 홍보물 등 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 작 비 용 등은 당사 가 부담함	가 맹점 사업자 가 직접 판매 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 플렛·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	판촉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참여 여부 결정 (전체가맹점의 70%찬성)→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70% 미만 찬성의 경우 비용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이 참석하는 판촉 행사가능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모든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한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 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본 가맹계약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항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 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 기간	소요 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서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9페이지		9페이지 참고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등	- 공사 실시	D-24~5(20일)	13페이지 참고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 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 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 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포환경개선 사유	경우
음포현장계인 NA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가맹본부 부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항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지급 절차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비용 타다 페이 110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 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 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4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배달포함)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및 신 메뉴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카페유어프레즌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회사 소개	- 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신규 교육	조리 방법	- 집단 또는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입금 방법 등	개별 강의	우 1개결 이대	
		- 실습 교육		
재 교육	부족부분 보완	- 집단 또는	본사 판단	
		개별 강의		
	신메뉴 조리	- 실습 교육		
수시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집단 또는	필요시 마다	_
	중합권 전디 설구 등	개별 강의		
		- 실습 교육		
특별 교육	상황마다 다름	- 집단 또는	필요시 마다	
		개별 강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카페유어프레즌트]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u>반 및 비용은 다음과 같</u>	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주	6,600	최초 계약시 이수
재교육	1주	_	
보수 교육	1일(소요예정임)	-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1일	_	_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계약서 제22조에 따라 수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 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 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팀(Tel:031-8011-36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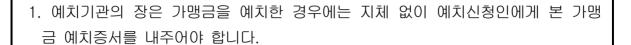
[별첨] 가맹금 예치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카페유어프레즌트					
	성명(대표자)	권 정 기					
	주소(사무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42 전)	화: 03	31-8011-3630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	치기관의 장 귀	āl					
	지점장	∵ 1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 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내부설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간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탁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메뉴 및 권장가격]

구분	메뉴명	가격 (원)
시즌메뉴	생딸기보틀우유	6,500
시단배표 	생딸기규크케이크	6,500
LIMITED	크리미카노	6,000
LIIVIIILD	더티카라멜	6,500
	달달소금라떼	6,000
	소금라떼	5,500
SIGNITURE	흑임자커피	5,500
	보틀밀크티	6,000
	고디바핫초코	6,500
	아메리카노	4,000
	플랫화이트	4,500
COFFEE	카페라떼	4,500
	수제바닐라라떼	5,000
	카푸치노	5,000
HEALTHY JUICE	케일주스	6,000
HEALINY JUICE	밀싹주스	6,000
	자몽에이드	5,500
ADE & TEA	자몽차	5,000
ADE Q TEA	레몬에이드	5,500
	레몬차	5,000
	마늘비스킷	3,500
DECCEPT	콘타르트	2,200
DESSERT	카라멜휘낭시에	2,200
	초코마들렌	2,500

[별첨]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 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제 공 일 시 :					
수 령 장 소 :					
수령자 주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대표 ((인)			
※ 가맹본부란 제외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